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공정성 강화〉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7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공정성 강화	3
2. 보수교육 제도의 규제 합리화	10
3.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폐지	14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3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의 양성 및 관리 제도는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나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 및 자격 관리와 관련된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자격 취소 이후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교육사의 자율적인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4조).

Ⅲ. 검토의견

1.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공정성 강화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근거와 부정행위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취소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및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환경교육사) ① (생략)	제16조(환경교육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u>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u>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 ----- <u>집행이 면제된 날부터</u>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6조의2(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
격한 경우에 인정한다.

② 부정확한 방법으로 환경교육사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거나 평가
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평가일부터 3년
간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에 응시
할 수 없다.

④ 환경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평가운영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게 된 경우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교육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환경교육사 제도 개요]

- 목적 : 환경교육의 전문성·신뢰성·실천성 제고
- 연혁 : 2015년부터 시행
-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26년 기준 17개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 부여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 수행
- 자격요건

구분	자격기준
1. 환경교육사 1급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환경교육사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환경교육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2급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환경교육사 3급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한다.
2.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5년 기준 환경교육사는 누적 3,783명으로, 매년 500여명의 환경교육사가 배출되고 있음.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현황(누적)]

(단위 : 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	2,580	3,171	3,783

이와 같이 환경교육사의 취득자수가 증가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학교환경교육 의무화²⁾에 따라 환경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역량 강화 및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해진 상황임.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시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자격 제한 고지를 받은 응시자가 동법에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유보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현행법 시행령 [별표 1] 비고2.에 따라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30.)이 고시되어 평가방법·이수요건 등이 규정³⁾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간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임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3)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평가 방법) ①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요건) ①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
② 교육과정별로 80%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 출석해야 한다.
③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요건 중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별표 4의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변호사시험법」 등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유사입법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격 취득 과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은 환경교육사의 결격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자격취소 후 재취득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특정 자격을 소지한 자의 결격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 유사입법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있음.

[결격사유 유사입법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보수교육 제도의 규제 합리화

개정안은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의무 및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34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환경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 -----.

현행법은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유지·강화하고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교육사에게 정기적으로(3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음.⁴⁾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개요]

구분	내용
대상	학교·법인, 어린이집,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로서 최초 자격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로 3년이 되는 자 또는 종사자 중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자
교육시간	7시간(1일)
교육방법	집합교육(부득이한 경우 원격교육)
교육내용 및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당기관이 정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의무는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된 동법에 신설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교육·보육시설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환경교육사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환경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음.

참고로, 2025년 기준 환경교육사 중 보수교육 신청자⁵⁾는 1,070명으로,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보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환경교육사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2025년 기준 216명)와는 다름. 기후부는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파악을 위해 공문을 보내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의무 수강 주기 등을 조사하였으나, 공문의 회신율이 높지 않고 조사의 강제성이 없어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이 중 703명이 보수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율은 83%임.

[최근 4개년 연도별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

구분	신청자(명)	정원(명)	수료자(명)	수료율(%)
2022년	273	288	219	76
2023년	392	399	316	79
2024년	370	490	338	69
2025년	1,070	842	703	83

※ 2022년 환경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보수교육 의무화가 실시되었음. 2026년 정원은 연초에 각 양성기관에서 제출한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변동 가능하며, 신청자·수료자 수는 연말 일괄 집계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단순히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 편의적 규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 보수교육 의무 규정 및 미이수 과태료를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수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율적 전문성 향상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경교육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보수교육 의무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삭제할 경우, 보수교육 참여율이 저조해져 환경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으며, 국가의 시책 마련 의무만으로는 실질

적인 보수교육 이수가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유사입법례인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등에게 보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따라서, 환경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해 현행처럼 ‘보수교육 의무화 및 제재 조항’을 유지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피규제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시책 마련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는 환경교육의 실효성과 규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6)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6조(과태료)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폐지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 6.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 8. (생략) ② ~ ⑤ (생략)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생략)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발굴·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 -----.

정부는 「국가표준기본법」 7)에 따라 “적합성평가” 제도가 부처의

7)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참고자료 3 참조)를 수행하고 있음.

2025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동법 제21조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는 실효성이 낮은 것⁸⁾으로 나타나 “폐지” 조치를 받게 되어, 개정안은 동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실효성이 적은 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8) 2025년 검토 결과 : 폐지

- 동법 내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의무화하는 동일 정책 목적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추가 인증/지정 제도 불필요

※ 참고 1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현황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 **(목적)**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사 양성을 통해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 제16조(환경교육사)
- **(자격부여권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자격요건 및 역할, 기능**

구분	자격요건	역할 및 기능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 취득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과 경영 ■ 기관 운영 총괄 책임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 ■ 환경교육 관련 6년 이상 경력	■ 환경교육 사업기획과 기관 내 인적자원 관리 ■ 환경교육기관 중간관리자 역할
3급	■ 누구나 (3급 양성과정 이수자)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안 개발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환경 관련법 및 성관련 범죄를 범한 자
- **위반사항 및 처벌내용**(환경교육법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위반사항	처벌내용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환경교육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과태료(300만원 이하)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10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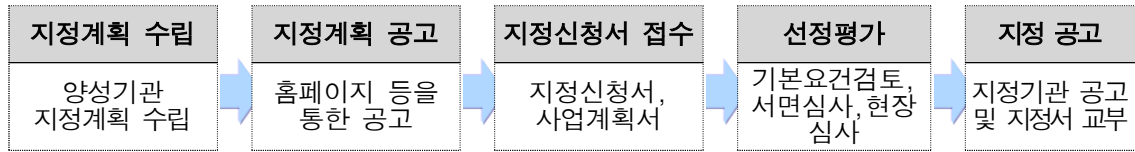
- **(보수교육)**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종사자는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구분	내용
대상	학교·법인, 어린이집,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로서 최초 자격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로 3년이 되는 자 또는 종사자 중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자
교육시간	7시간(1일)
교육방법	집합교육(부득이한 경우 원격교육)
교육내용 및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당기관이 정함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구분	지정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2급 [3개소]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삼대길 50	2025.1.1. ~ 2027.12.31
	시흥에코센터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2026.1.1. ~ 2030.12.31.
	경상남도환경재단	경상남도 산청군 사천면 지리산대로 1	
3급 [13개소]	경상남도환경재단	경상남도 산청군 사천면 지리산대로 1	2024.1.1. ~ 2026.12.31.
	원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765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7	
	시흥에코센터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336-97	2025.1.1. ~ 2027.12.31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510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116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 마포구 증산로 14	
	제주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226	
	맹산환경생태학습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28	2026.1.1. ~ 2028.12.31.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사로 1099번길 111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1층	
	수지환경교육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37	2026.1.1. ~ 2030.12.31.

- 지정절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배출자 수('15년~'25년) *단위 : 명

구분	총계	2급	3급	3급(정규)	3급(간이)
'15년	60	-	60	-	60
'16년	60	-	60	-	60
'17년	89	-	89	-	89
'18년	184	-	184	49	135
'19년	365	33	332	33	299
'20년	398	54	344	32	312
'21년	540	78	462	209	253
'22년	328	47	281	281	-
'23년	556	75	481	481	-
'24년	591	80	511	511	-
'25년	612	25	587	587	-
계	3,783	392	3,391	2,183	1,208

※ 참고 2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운영 현황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 (목적)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보급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 (지정권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지정절차

사전 컨설팅	지정신청	지정심사	지정심의의결	지정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기관)	(신청기관)	-요건검토(지정사무국) -서류심사(심사평가단) -현장심사(지원단)	(우수환경교육 지정 분과위원회)	-운영결과보고 -이행확인점검 -지정변경 -프로그램 홍보 등

○ 신청요건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지자체, 기업, 학교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누구나 신청 가능
프로그램 필수조건	- 프로그램 교육시간이 동일 대상 최소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비대면 동일 대상 최소 60분 이상)
책임 개발자 필수조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 환경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환경교육사 2급 취득자 -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분야에 만2년 이상 경력자 - 환경교육사 3급 취득 후 환경교육 관련분야에 만2년 이상 경력자 - 환경교육 관련 분야에 만6년 이상 경력자

○ 연도별 지정현황('26.4.기준)

(단위 : 개)

구분	누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청	2,301	47	103	129	90	82	112	85	75	136	140	123	143	274	247	279	236
지정	1,723	34	72	77	65	56	86	71	58	121	115	101	130	174	157	221	185
유효	548	-	-	-	-	-	-	-	-	-	-	-	-	-	145	218	185

※ 참고 3 :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개요(자료 : 산업통상부)

- **[배경]** 정부는 전체 인증제도 대상 3년 주기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운영중('19년~)

*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의 특성,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인증, 검사, 지정 등을 포함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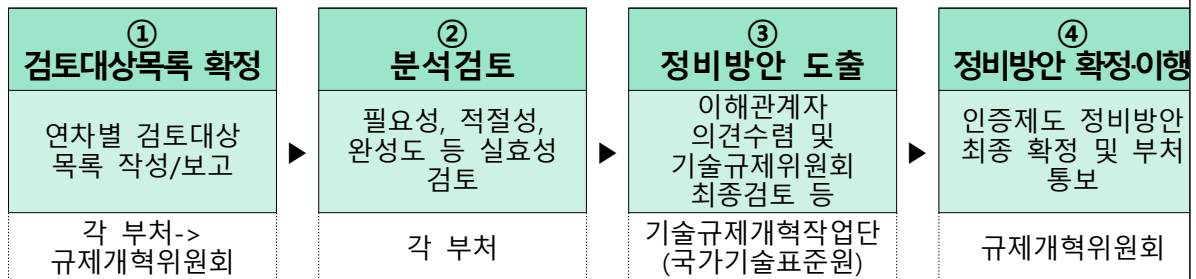
인증	검사	지정	기타
 KC/KS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벤처기업 확인 에너지효율표시

- **[주요내용]** 각 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인증제도가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검토

<실효성검토 항목>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법정제도로 유지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유효기간, 비용, 기준 등 적절성 ▶국가, 국제표준과의 조화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적절성	▶근거, 대상, 범위 등의 명확성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절차 ▶위법사항 처벌근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절차 및 추진체계>



- **[추진경과]**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업무 법적근거 확립('18년) 및 1, 2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실시('19년~)

- 업무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정비* 및 국표원(기술규제개혁작업단)이 사전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총리 훈령** 정비

* 「국가표준기본법」('18. 6.), 동법 시행령 개정('18. 12.)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8. 12.)

- 1주기('19~'21) 186개 검토, 88개 정비안(폐지 13, 통합 4, 개선 71) 도출, 2주기('22) 64개* 검토, 50개 정비안(폐지 10, 통합 1, 개선 39) 도출

* 2주기 당초 검토대상 222개 중 '23년 79개, '24년 79개는 '24년 「인증 규제 정비」 방안(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이 인증제도를 원점 재검토)으로 대체됨